

18. 재판소원허용사건

<헌재 1997. 9.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종전 10년사 p. 403 사후경과에 추가]

헌법재판소의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96헌마172사건의 쟁점은 2003. 4. 24. 2001헌마386 사건에서 또 다시 쟁점화 되었다.

2001헌마386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 화재보험주식회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 법원에 해당 소송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던 중 당해 민사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당해 소송사건은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1994. 12. 29. 93헌바2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1995년 1월 경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27.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5재다14)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및 대법원 2001. 4. 27. 95재다14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청구인과 승계참가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7인의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고, 김영일, 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재판부는 결정의 이유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취하 당시 여러 차례의 평의 과정을 거쳐 실제적인 심리를 사실상 종결하였다는 점, 취하가 없었다면 선고되었을 평의결과와 그 이유는 반대의견이 밝히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상세하게 밝혔다. 결국, 재판관들의 의견은 청구인의 취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주문에 관한 의견이 다수와 소수의견으로 나뉘었으나 청구인들의 취하 이전에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가 반대의견을 통하여 밝힌 청구인의 취하 이전의 평의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우리 헌법재판제도에서 법원이 그의 재판에서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헌성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및 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정유형인 한정위헌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이며, 그 결과 특정한 해석방법을 위헌적인 것으로 배척함으로써 사실상 일부위헌선언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법률에 대하여 실질적인 일부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법률을 수정하는 권한은 규범통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에 유보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말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란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주문 형식으로든 법원이 적용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위헌성확인의 결과를 법원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규정이 바로 동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허용규정인 것이고, 동 조항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의 한정위헌결정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을 가지는 위헌결정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법 제75조 제7항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포괄적인 규범통제권한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 의한 법률적용에서 드러난 위헌적인 해석방법을 배제하면서 위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법 제75조 제7항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한정위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7. 12. 24. 선고된 96헌마172 등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위 사건에서 인정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 법 제75조 제7항이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재심을 허용하고 있고, 여기서 “인용된 경우”란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적용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한 모든 경우에 해당함에도,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위법규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인용결정’에 한정위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재심사유를 부인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